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2. 26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143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9. 2. 26)

상정, 심사, 수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이 수 병

가. 개정이유

1) 마포아트센터는 전문 공연시설을 갖추고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공연사업에 적합한 주차요금 항목과 전문 공연시설 수준에 맞는 주차요금을 책정하고

2) 마포아트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 에너지 절약 등 정부 및 구의 시책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개정 내용

1) <별표> (제12조제1항 관련) 내용중 일부내용 개정 및 신설

가) 주차료 항목 구분을 일반 차량, 공연관람 차량, 공연장대관 차량(대공연장, 소공연장), 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 기타 차량으로 구분하여 주차료 재정리

나) 공연관련 주차료는 공연관람 차량에 대하여 4시간 3,000원 (추가 10분당 500원)으로 하고, 공연장대관 차량에 대하여

대극장의 경우 차량 5대까지 무료, 소극장의 경우 차량 3대  
까지 무료로 하며 대관에 따른 일일 주차권은 12시간 기준  
5,000원 판매토록 적용 등

다) 대중교통이용, 승용차요일제, 에너지 절약 등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시책에 따라 주차장 이용 제한 가능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명금길)

○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전문공연시설을 갖추고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연관람자에게 2002년 센터개관시 책정된 문화·  
체육프로그램 회원 대상 주차료를 적용하고 있어 일부 폐지된 프로  
그램에 따른 주차료 항목을 삭제하고 공연고객에게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주차 요금을 책정하여 고객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및 구 시책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제출된 것임  
<별표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대관료, 강습료, 이용료) 종류 및 징수  
기준 중 제1호나목 개별기준 (7)주차료에서 개정,신설된 주요내용>

(1) 모든 회원 (일일회원 포함) 및 공연관람자 차량은 기본 3시간은  
무료이고 이후 매 10분당 500원 추가 징수하던 것을 일반차량과  
공연관람차량으로 구분하여 일반 차량은 기본 30분에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으로 인상하고 공연관람차량은 기본 4시간에  
3,000원, 추가 10분당 500원으로 인상하여 기본 3시간 무료 제도를  
폐지하였음

(2) 다만 회원권 2개 이상 사용자 차량에 대해 기본 5시간 무료  
이고 매 10분당 500원을 추가 징수하던 것을 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으로 명칭만 변경하였을 뿐 일일회원포함 회원에게는 3시간  
무료, 2개이상 프로그램 이용 회원에는 5시간 무료로 하고 추가  
10분당 500원으로 기존 내용을 그대로 존치시켜 현행대로 유지  
하였음

(3)시설사용 행사차량은 기본 5대까지 무료이던 것을 공연장 대관차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시 대극장과 소극장으로 양분하여 대극장차량은 기존대로 기본 5대까지 무료이고 소극장차량은 기본 3대까지 무료로 하여 소극장차량 대수에 대해 제한을 두었으며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대·소극장 구분없이 동일하게 일일 주차권 12시간 기준 5,000원 판매라는 항목을 신설하였음

(4)동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차량과 수강신청, 방문 등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내용 변경없이 기타차량으로 통합 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목련홀을 다목적실로 용도를 변경하으로서 민방위 교육 훈련참가차량과 예식, 돌 및 회갑연 등의 행사차량난은 삭제하였음

(5)비고에 있는 1번에서 5번까지 5개 규정은 현행과 같고 추가로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 하였음

[검토의견]

○ 마포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전문공연장으로 탈바꿈하고 공연관람고객에게 수준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2002년도 개관시 문화·체육 프로그램 회원대상 주차료를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내 타 단체 시설이나 타 기관 시설의 주차료를 비교할 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의해 물가대책 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민의를 조금이라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또한 참고 자료를 검토해 보면 주차료 운영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597만원의 수익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민방위 교육참가 프로그램 및 여타 행사차량의 폐지 등으로 오히려 4872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조례 개정의 대외적 명분은 주차료의 현실화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부 시책 부응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자구책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더구나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개정시기가 적절한지 일부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동 개정안에서 별표에 규정된 내용 중 공연장 대관차량 부분에 있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대극장은 기본 차량 5대까지 무료, 소극장은 3대까지 무료”라고 하였으나 “1일 또는 당일” 또는 추가차량과 동일하게 “일일 12시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상호간에 애매한 부분없이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고객 배려 차원에서 공연장 대관차량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